

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공일자 2023. 12. 5.

총 4면

TEL 02)3299-3890

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획정안 마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구획정 결과

- 인구편차 허용범위 :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 : 서울△1, 인천+1, 경기+1, 전북△1

□ 주요 고려사항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기준 준수
-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 최소화
-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
-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 지양
-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고려

붙임 1.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문 1부.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 1부(별첨).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

오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민과 예비후보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행 지역 선거구 수를 유지하고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획정기준을 송부했습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비록 송부받은 기준이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충분치는 않으나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이 12. 5.까지였기에 획정위원회가 논의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현지실사, 기존 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하여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 대상 공청회 실시(2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던 점이 큰 뒷받침이 되었고,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청 기한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말 늦은 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한 결과 오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하였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하였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